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체포 강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 명 희*

초 록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 중한 범죄로 인식하기 보다는 집안일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법체계와 정책이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관의 인식은 교육이나 캠페인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가정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이미 다수의 경찰관들도 주지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결정을 미루는' 점은 피해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찰관에게도 부담을 주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 준다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정폭력, 경찰 정책, 체포 강제 제도, 체포의사결정

Ⅰ. 서론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경찰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경찰의 소극적 태도는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전

* 서울종로경찰서 경무계
교신저자: 주명희 (E-mail: dew1053@hotmail.com)

화 연합에서 발간한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2005) 라는 연례 보고서의 제목이 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3.75%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을 여전히 '집안 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는 태도는 가정폭력특별법이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경찰관의 대응'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형사부서 근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이 실제로 해결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범죄에 머무르느냐가 좌우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현장 근무 경찰관이 가진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경찰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다르고, 이 재량권은 제정된 법률이나 제도가 현실에 적용되고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경찰관의 인식과 현장에서 의사결정에서 고려하는 제반 요소들을 파악한 후,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체포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정책(Pro-arrest Policy) 혹은 체포 강제 제도(Mandatory arrest)에 관하여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하여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사건 처리 시 고려사항과 피해자의 의사 존중 여부
-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관한 현장 근무자들의 태도 등

세 가지 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 가설은

-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 인식들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장애가 된다.
- '현재의 가정폭력 특별법은 경찰관들의 비간섭주의를 개선하지 못한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는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 중에서도 '배우자간 폭력'으로 한정하였다.

논문의 첫 부분에서는 한국의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과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 체포 강제 제도, 가정보호 제도와 피해자 의사 존중이라는 세 가지 접근방법과 경찰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외국의 기존 연구들에 관하여 살펴보아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문제점 등을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정책

1.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

가정폭력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박은혜, 2005) 이는 한국 사회를 600년 이상 지배해온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필종부'로 요약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도는 가정내 성역할을 고정화 하고, 심지어 결혼은 '대를 잇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Song, 1996) 최근에는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 유교 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가족은 여전히 '여성의 권리'나 '양성평등'의 가치보다는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변화순 외, 1999)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존 관념의 변화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다소간 충

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전쟁 후 50년 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도입된 서구 문명으로 인하여 서구의 개인주의, 양성 평등의 가치가 기존의 유교 관념인 가족중심주의와 남성우월주의와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19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법적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실제적인 집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김영정, 1998)

이와 같은 의식과 제도의 괴리는 가정폭력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범죄에 머물러 있게 한다. 1998년 김재엽의 논문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율은 34.1%이나, 실제 신고율은 0.9% 수준이라고 한다. (김재엽, 1998) 비록 특별법의 제정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기는 하나 낮은 신고율과 높은 발생율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20% 이상의 피해자들이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돌아갔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무려 15%의 피해자들이 심지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김병주, 1999) 가정폭력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법 집행이 필요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별법)이 1997년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그 목적을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경찰관에게 응급조치의 의무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다시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며, 가해자의 체포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정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제반 정책들을 꾸준히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처리 지침에 관한 책자를 발간 보급하였다. (표창원, 2000) 또한 여성 경찰관의 수를 늘이고, 2002년 기존 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계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3. 정책의 문제점

법의 제정과 경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는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43.75 %의 응답자가 '경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6.25%는 '경찰서에 나중에 고소하라고 했다'고 응답하였다는 결과는 (여성의 전화 연합, 2005)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을 인식하는 태도가 법 제정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이 채택한 가정폭력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비판의 내용이다. (박인혜, 2005)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포 강제 제도(Mandatory arrest)를 포함하는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Pro-active policy)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과 가해자의 체포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도 가정 보호에 기반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1) 가정폭력 사건을 다른 폭력 사건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근거가 없고, 2) 불법 혹은 과잉 체포의 우려가 있

고, 3) 가정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경찰에게 전가될 수 있고, 4) 현재의 법률 체계내에서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경찰은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금형, 2005) 굳이 체포 강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률 하에서는 체포 강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1)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2) 체포에 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며, 3) 두 당사자 모두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방식과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후 경찰의 개입이 가정폭력 사건의 억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었고, 미국 밀워키 주에서 시행된 체포 강제와 폭력 억지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Sherman, 1994) 또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들에 관하여도 상당수의 연구들이 있다.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행태에 관한 연구는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 관련 경찰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체포 강제 제도에 관해

⑴ 체포 강제 제도

외국의 체포 강제 제도의 내용

영국 내무성(HomeOffice, 2005)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매주 2명 이상의 여성들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심각한 가정폭력 문

제 해결을 위하여 런던 경찰청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서도 다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포 강제 제도 혹은 적극적 개입 정책은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경우 가해자를 체포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체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며, 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Jones, 1999) 영국의 경우 체포는 의무이지는 않으나 경찰관들에게 가해자를 체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내무성 발간 지침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체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가해자는 통상 체포되어야 한다.

체포 강제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를 차별하는' 경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Stark, 1993) 즉, 다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체포'라는 경찰권한의 발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경찰관들의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 낮은 체포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연인 간의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체포 비율(17%)은 다른 폭력 사건(24%) 보다 낮다고 한다. (Eigenberg 외, 1996)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체포 보다는 중재나 화해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Hoctor, 1997) 이러한 '다른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정폭력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찰관의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체포 강제 제도의 폭력 저지 효과

체포 강제 제도와 추가 폭력 발생 저지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어왔다. 1984년 미국 밀워키에서 시행된 체포 강제 제도와 저지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Sherman, 1984) 이 연구에 따르면 폭력 재발율이 체포된 가해자 집단보다 상담 의뢰된 가해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실업 상태의 가해자 집단의 경우에는 추가 폭력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Sherman, 1994) 다른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포가 일반적으로 추가 폭력 발생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적극 개입 정책은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신고율을 높이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⑵ 체포 강제 제도에 대한 비판의견 - 중재제도, 피해자 의사 존중 제도

반면, 체포 강제 제도가 가정폭력 사건 해결에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에는 기존의 중재와 가정보호를 중시하는 입장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재 제도

통상, 형사사법체계는 '가정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태도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다루어지며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다. 이 태도는 중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중재는 가정폭력 사건을 범죄가 아닌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중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양성 중립적, 평등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Hilton, 1990) 비록 중재가 사적인 명령이기는 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법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수동적인 피해자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ifkin, 1984)

피해자 의견 존중

체포 강제 제도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의견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Victims' interest approach, Hoyle, 1998) 그 근거로는 체포가 항상 피해자 보호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든다. 체포를 통한 사건 처리 절차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필요에 의한 대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법률적 합리성과 신뢰성' 이라는 법적 문제만을 고려하며, 실

제로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 (Manning, 1993) 또한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협조가 가해자를 기소하는데는 필수적이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 강제 제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Holye, 1998) 보복의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부담, 관계의 파탄을 원치 않는 것 등이 고소 취하의 주된 원인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은 경찰관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Stanko는 각각의 여성들은 각각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체포가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Stanko, 1995)

이들은 체포 대신 피해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경찰관의 협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더구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법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Hart, 1996)

또한 체포는 의도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 즉, 추가적 폭력이 발생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 폭력의 경우 체포 강제 제도 하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했음에도 체포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Crane, 1987)

⑶ 체포 강제 제도의 필요성

이러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체포 강제 체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이다.

중재를 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가정을 사적인 공간으로 여기게 되며,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 폭력 사건은 '커튼 룰'이라고 하는 비간섭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Kurz, 1993) 중재에 전재되어있는 '가정 문제'라는 인식은 피해자 개인에 촛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에 중심을 둠으로써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두 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성립되는 중재는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가족 헤게모니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지위가 가족 내에서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피해자화 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 접근법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상황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게 되기 쉽다. (Hilton, 1990) 즉,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유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정의(family justice) 로의 회귀는 여성의 정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Bottomly, 1985)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 또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부담을 지운다는 단점이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배우자/파트너를 '감옥에 보내는'데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데, 피해자 중심 접근법은 기소와 공소 유지 및 처벌 등 일련의 형사절차 진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때 형사 절차에 더욱 협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Hoctor, 1997) 더구나 높은 고소 취하율은 법집행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뢰할 수 없다는 편견을 심어주는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결정권을 피해자에게 맡기는 것은 이러한 편견을 강화하게 된다. Gwinn은 그의 논문에서 '범죄의 피해자는 훈련되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도 경찰이나 검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들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것을 그만두고,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Gwinn and O'Dell, 1993)

피해자가 오히려 체포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체포 강제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주된 가해자'(primary aggressor) 를 선별 체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각 당사자의 상처를 비교하고, 가정폭력 발생의 경력과 자기 방어로 유발된 폭력 등을 고려하여 체포를 한다면 피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Hoctor, 1997) 적절한 훈련과 법의 제정을 통해 각 경찰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체포가 추가 폭력 발생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방치한 경우 그 정도와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Zorza, 1994)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를 억지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내 살인이 감소하였다는 보고는 체포 강제 제도가 가정 내 폭력 발생을 억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Hoctor, 1997)

앞서 언급한 대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은 일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관한 논의를 맺으면서 결론을 대신하여 Hoctor의 논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 '비록 체포 강제 제도를 둘러싼 타당한 문제 제기들이 있기는 하나, (중략) 체포 강제 제도(주된 가해자 선별 방식) 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하고, 사회 전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자에게 안전함을 확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가해자에 대한 기소나 접근 금지 명령을 피해자들이 요청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형사사법체계가 가정폭력 사건이 실제로는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중요한 범죄' 임을 먼저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Hoctor, 1997, p.699)

2. 경찰관의 현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⑴ 경찰 의사결정의 중요성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는 바, 정책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 경찰관의 이와 같은 태도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고려 사항이다. 또한 경찰관의 역할은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시 경찰관의 개입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은 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상황 아래 있는 여성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Hague and Malos, 1993)

또한 가정폭력의 정책과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이는 경찰관 특유의 문화적 요인과 직업적 가정(Working assumption: 일을 하면서 형성된 경찰관 개개인이 가진 상황 판단 기준,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mith and Gray, 1983) 미국에서도 실제로 체포 강제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은 실제로 가정폭력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여전히 꺼린다는 보고가 된 바 있다. (Jones, 1999)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행사하는 재량권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비록, 체포를 의무화 한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려사항들 중 1) 경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2)현장에서 고려되는 가해자,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3) 각종 정책과 경찰관의 근무처, 근무연수 등 직업적 측면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⑵ 의사 결정과 관계있는 요소들

일반적 인식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귀찮은 사건'(rubbish work) 으로 인식하고 있다. (McConvile 외, 1991) 일부 경찰관은 '남성 가해자들이 원한다면 집안 물건을 부수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들의 상처는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너무 경미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Ferraro, 1993)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체포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Klinger, 1995) 또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내 혹은 파트너간의 문제'라는 인식 틀을 가지고 있고, 체포 보다는 여타 보호기관 등에 인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Edwards, 1989)

피해자, 가해자의 태도, 경력

경찰관들은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비 협조적이고, 곧 고소를 취

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은 경찰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 체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과 직결된다. (Robinson and Chandek, 2000)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가해자에 대한 체포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체포를 원치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체포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명백하다. 피해자의 의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합리적이고 경찰관의 말에 잘 따르는 경우'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 가해자를 체포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Buzawa and Austin, 1993)

이외에도 경찰관들이 고려하는 사항들로는 가해자의 전과와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이다. 가해자가 전과가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경우 체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처가 심할수록 가해자 체포율이 높아진다.

경찰관의 근무 연한, 성별, 정책 등

경찰관의 근무 연수 또한 가정 폭력 사범의 체포율과 관련이 있다. 냉소적인 경찰 문화를 고려할 때, 경찰관의 근무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체포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Niederhoffer, 1967) Stalans 과 Finns (1995) 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연한이 짧고 가정폭력을 다루어 본 경험이 적은 경찰관일수록 '비난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무연한이 길고 가정폭력을 많이 다루어본 경찰관일수록 '공소유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나이가 많은 경찰관의 경우는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비협조적인 반면, 젊은 경찰관들은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를 보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연장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 곧 부정적으로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Grace, 1999)

여성 경찰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욱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사실 증명된 바는 없다. 오히려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들에 비해서 체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여성 경찰관

들이 체포보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Worden, 1993)

경찰의 정책이나 지원이 각 경찰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체포 강제 제도가 도입되면 체포율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한데 비록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는 정책이 지지하는 방향대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 담당 특별 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 수준과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 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Ⅳ. 한국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 설문조사

1. 연구의 방법과 표본 분포

본 연구는 경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전체적으로 양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7월 1달간 전국 경찰관 106명을 상대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와 더불어 참여관찰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연구자의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인하여 이메일 설문조사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설문지의 각 문항별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많은 경찰관들이 자신이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추가로 기재하여 응답해주어, 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양적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소간 극복할 수 있었다. 설문의 분석은 빈도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성별이나 근무부서, 근무연한 등과 체포 의사 결정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상관관계 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아래 표 (1)은 설문 응답자의 분포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을 '배우자간 폭력'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였으므로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간 폭력'임을, 체포는 외국과

한국의 체포절차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본 설문조사에서 의미하는 체포는 '체포(현행범 혹은 긴급) 또는 입건' 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2. 설문 분석 결과

<표 1> 응답자 분포

		응답수	비 율
1. 성 별			
	남	92	86.8
	여	14	13.2
2. 계급			
	경감 이상	4	3.8
	경위 이하	102	96.2
3. 부서별			
	형사, 수사	37	34.9
	여성 청소년계	13	12.3
	지구대, 파출소	46	43.4
	기타	10	9.4
4. 가폭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			
	있다.	95	89.6
	없다.	11	10.4
5. 여경들과 같이 근무해 본 경험			
	있다.	84	79.2
	없다.	22	20.8
	Total	106	100 %
6. 나이			
	평균	39	
	중간값	38	
	표준 편차	6.6	
7. 근무 연수			
	평균	12.9	
	중간 값	11.5	
	표준 편차	6.9	
8. 파출소 근무 연수			
	평균	5.9	
	중간 값	5	
	표준 편차	5.2	

(1)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 인식: 까다로운 사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관들은 대체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80%의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은 다루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55.7%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의견대로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경찰관은 설문 응답에서 '피해자들은 경찰관이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찰관들에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대답해 주기는 어렵다. 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진정되고 나면 가해자를 체포했다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4명의 응답자는 오히려 가정폭력 사건이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쉽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당사자들이 진정되고 나면 오히려 경찰관의 개입을 원치 않아서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되는 점을 들었다.

<표 2>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 1 - 어려움

	응답	%	누적 비율
1. 가정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다루기 어렵다.			
매우 동의한다.	22	20.8	20.8
다소간 동의한다.	62	58.5	79.2
모르겠다.	12	11.3	90.6
다소간 동의하지 않는다.	9	8.5	99.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0.9	100
2. 어렵다면 그 이유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10	9.4	9.4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때가 많다.	59	55.7	65.1
절차가 복잡하다.	14	13.2	78.3
가해자들의 저항이 심하다.	5	4.7	83.1
기타	2	1.9	84.9
무응답	16	15.1	100
3. 어렵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4	3.8	3.8
경미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4	3.8	7.5
당사자들이 경찰의 말에 잘 따른다.	2	1.9	9.4
기타	4	3.8	13.2
무응답	92	86.8	100
total	106	100 %	

<표 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2 - 경미한 사안

	응답	%	누적 비율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경찰관이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			
매우 동의한다.	8	7.5	7.5
다소간 동의한다.	51	48.1	55.7
모르겠다.	32	30.2	85.8
다소간 동의하지 않는다.	15	14.2	100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0	0	100
무응답	0	0	100
total	106	100 %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실제로 경미한 사안이라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몇몇 응답자들은 '경찰관이 가정을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대다수의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도 잘 지낸다'라며 가정폭력 범죄를 여전히 '부부싸움'으로 보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경미한 사안에도 경찰관이 일일이 개입한다면 권력남용이나 불법체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표 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3 - 해결방법

	응답	%	누적 비율
가정을 생각해서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우 동의한다.	11	10.4	10.4
다소간 동의한다.	43	40.6	50.9
모르겠다.	20	18.9	69.8
다소간 동의하지 않는다.	30	28.3	98.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	1.9	100
무응답	0	0	100
가정폭력 사건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가해자 체포 및 처벌	6	5.7	5.7
두 당사자 분리, 피해자 보호	65	61.3	67.0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25	23.6	90.6
당사자간 알아서 해결	8	7.5	98.1
기타	1	0.9	99.1
무응답	1	0.9	100
Total	106	100 %	

가정폭력의 해결책에 대한 응답에서도 경찰관의 '비간섭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50.9%의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은 가정유지의 측면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의 경찰관(5.7%) 만이 가해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응답하였고, 61.3%에 이르는 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특별법'이 현재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정의 유지라는 입장과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경찰관은 추가 의견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기소나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벌금형에 빠뜨릴 수 없는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벌금 내는 것이나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문제들을 걱정한다.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설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 현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응답은 23.6 %의 응답자들이 피해자의 의사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처벌의사의 철회)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냉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체포하였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를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라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고소를 취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경찰관이 가진 직업적 가정(working assumption)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집안일이니 알아서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7.5% 의 경찰관이 두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5>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유약함

	응답	%	누적 %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매우 동의한다.	16	15.1	15.1
다소간 동의한다.	54	50.9	66.0
모르겠다.	18	17.0	83.0
다소간 동의하지 않는다.	15	14.2	97.2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2	1.9	99.1
무응답	1	0.9	100
Total	106	100 %	

경찰관들은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질문은 여성의 지위가 다소간 향상되고, 부부간 상호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관들이 여성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추가된 것이다. 성별화된 시각을 단순한 질문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유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다소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6%의 경찰관들이 여전히 여성이 유약한 위치에 있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⑵ 체포 의사 결정

<표 6>은 경찰관들의 의사 결정에 관하여 두 가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응답하는지 보여준다. 두 당사자가 상호 폭행하고, 신체적인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둘 다 체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응답자가 68.9%에 이르렀다. 반면 상호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없고 집안 물건들만 부서진 경우에는 둘 다 체포하겠다는 응답이 35.%로 낮아졌다. 특히 단순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9%로 높아졌는데, 이는 재물손괴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체포하지 않는 이유를 응답한 문항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안이라 개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이 각각 13.2%와 17%로 나타났다. 즉,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인 ‘집안일’, ‘경미한 사안’, ‘피해자의 고소취소’ 등이 체포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체포할 것인지에 관하여 흥미로운 점은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을 체포하는 결정이 상호 폭행을 했을 때와 단순 재물 손괴인 경우에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둘 다 상처를 입은 경우는 8.5 %의 경찰관만이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을 체포한다고 응답한 반면, 재물 손괴의 경우는 22.6%의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을 체포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몇몇 경찰관은 추가 의견에 둘 다 입건하더라도 ‘수사 보고서에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를 가려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성 당사자를 체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보아 경찰관들이 가해자를 체포할 때는 남/여를 구분하기 보다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체포 의사 결정에 관해 1

	응답	%	누적 %
1. 두 사람이 모두 상처를 입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둘 다 체포한다.	73	68.9	68.9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을 체포한다.	9	8.5	77.4
상처가 덜 한 사람을 체포한다.	7	6.6	84.0
남편을 체포한다.	10	9.4	93.4
체포하지 않는다.	7	6.6	100
	106	100	
2. 상처 없이, 집안의 물건들만 손상이 된 경우			
둘 다 체포한다.	38	35.8	35.8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을 체포한다.	24	22.6	58.5
남편을 체포한다.	7	6.6	65.1
체포하지 않는다.	37	34.9	100
	106	100	
3. 체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14	13.2	13.2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3	2.8	16.0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8	17.0	33.0
불법체포의 우려가 있다.	7	6.6	39.6
기타	1	0.9	40.6
무응답	63	59.4	100
Total	106	100 %	

<표 7> 체포 의사 결정 2 - 체포시 고려하는 것들, 복수응답

	응답	%	누적 %
체포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26	9.6	24.5
가해자가 경찰관에게 심하게 저항할 경우	28	10.3	26.4
가해자가 처벌 혹은 신고된 적이 있는 경우	67	24.7	63.2
피해자의 상처	61	22.5	57.5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	67	24.7	63.2
현장에 아이가 있는 경우	20	7.4	18.9
기타	2	0.7	1.0
Total	271	100	255.7

체포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상습성이 각각 24.7%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가 22.5 %의 비율을 보여, 위 세가지 사항이 가해자 체포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상처, 상습성 등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서 '공소유지의 가능성'이라는 법률적 요건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나 저항 등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처를 더 고려하는 것은 가정 폭력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8> 체포 의사 결정 3 - 피해자의 의사

	응답	%	누적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	16	15.1	15.1
피해자를 설득하여 계속 사건을 수사한다.	5	4.7	19.8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체포하지 않는다.	81	76.4	96.2
기타	4	3.8	100
Total	106	100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76.4%의 경찰관이 체포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경찰관이 사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기소가 불가능한 법률적인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5.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의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체포하는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전에도 신고된 적이 있는 경우나 상황이 심각한 때'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경찰관은 '몇몇 가해자의 경우는 체포되었다가도 곧 풀려날 것을 알기 때문에 체포된다고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섣불리 체포했다가는 오히려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위험만 높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⑶ 가정폭력 정책에 관한 인식

경찰관들은 특별법에 의한 임시조치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 60%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응답 했으며 단지 12.3% 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접근금지명령 등 응급조치 명령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해자를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체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적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 비난을 경찰에게 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관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검사를 통해서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송치 단계에서도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수사 절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당자-결재권자-검찰-법원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책임있는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수사에서 계속해서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시간상, 절차상 번거로운 일로 인식될 수 있다.

<표 9> 가정폭력 정책 1 - 임시조치

	응답	%	누적 %
가폭법에 명시된 임시조치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매우 효과적이다.	1	0.9	0.9
다소간 효과적이다.	12	11.3	12.3
잘 모르겠다.	30	28.3	40.6
다소간 효과적이지 않다.	45	42.5	83.0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	18	17.0	100
무응답	0	0	
효과적이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그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5	4.7	4.7
계속해서 가해자를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	34	32.1	36.8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5	4.7	41.5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다.	26	24.5	66.0
기타	1	0.9	67.0
무응답	35	33.0	100
Total	106	100 %	

임시조치 이외에 가정폭력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경찰관의 평가도 다소간 낮게 나타났다. 48% 상당의 경찰관이 현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의료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경찰관들은 응답에서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경찰관이 적절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불평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 폭력 사건 관련 교육에 관하여도 40%의 경찰관이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교육을 받은 응답자 57명 중 16명만이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경찰청이 실시하는 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건 연구의 대상이 수사, 형사 부서와 지구대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이론적이거나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표 10> 정책 2 - 경찰청의 지원 및 교육

	응답	%	누적 %
1. 경찰청의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지원이 적절하고 충분하다.			
매우 그렇다.	1	0.9	0.9
다소간 그렇다.	8	7.5	8.4
모르겠다.	46	43.4	51.8
다소간 그렇지 않다.	40	37.7	89.5
매우 그렇지 않다.	11	10.4	100
	106	100	
2.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받아본 횟수는?			
없다.	48	45.3	45.3
1회	12	11.3	56.6
2회	32	30.2	86.8
3회	11	10.4	97.2
4회 이상	3	2.8	100
	106	100	
3. 교육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0	0	0
다소간 만족	16	15.1	15.1
모르겠다.	34	32.1	47.2
다소간 불만족	6	5.7	52.8
매우 불만족	1	0.9	53.8
무응답	49	46.2	100
4 불만족 하다면 그 이유는?			
이론적이어서 현장 상황을 반영치 못한다.	14	13.2	13.2
피해자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4	3.8	17.0
교육을 받아도 정확한 지침이 없다.	7	6.6	23.6
교육 횟수가 부족하다.	1	0.9	24.5
기타	1	0.9	25.5
무응답	79	74.5	100
Total	106	100 %	

경찰청이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한 대 여성범죄 처리의 해결책으로 여성청소년계의 신설과 여성경찰관의 증원, 여성청소년계에 여경을 배치하는 정책 등이 있다. 실제로 여경들의 비율은 1998년 0.98%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전체 경찰관의 4% 상당까지 이르고 있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이며 그 이유로는 여성 당사자들이 여경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 상당인 것으로 보아 여경들의 업무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폭력사건 현장에서 당사자들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7.9%와 10.4%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응답자는 추가 의견으로 여경들은 폭력 사건 현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범인의 체포와 여경의 보호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응답이 나온 이유는 기존 남성위주의 경찰 문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실제로 여경들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여성 당사자들이 여경들을 선호하고 여성범죄 처리에 있어서 여경들의 역할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표 11> 정책 3 - 여성 경찰관

	응답	%	누적 %
1. 여자 경찰이 가폭 사건 처리시 현장에 있다면 도움이 된다.			
매우 그렇다.	4	3.8	3.8
다소간 그렇다.	38	35.8	39.6
보통이다.	32	30.2	69.8
그렇지 않다.	26	24.5	94.3
매우 그렇지 않다.	6	5.7	100
	106	100	
2. 도움이 된다면 그 이유는?			
당사자들 제압에 도움이 된다.	5	4.7	4.7
여성 당사자들이 여성 경찰관을 더 선호한다.	37	34.9	39.6
여성 관련 범죄를 여성경찰관들이 더 잘 처리한다.	7	6.6	46.2
기타	2	1.9	48.1
무응답	55	51.9	100
	106	100	
3.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당사자들 제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	17.9	17.9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 처리를 못한다.	11	10.4	28.3
당사자들이 여성 경찰관을 신뢰, 선호하지 않는다.	2	1.9	30.2
여성관련 범죄라도 여경들이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10	9.4	39.6
기타	1	0.9	40.6
무응답	63	59.4	100
Total	106	100 %	

⑷ 상관관계 분석

본 설문 조사의 결과로 성별, 근무연수, 근무부서와 각 응답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할 수 없었다. 특히 체포 의사결정과 일반적인 인식과 변수별 상관관계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로는 한국의 현재 정책이 체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본 설문조사가 자기응답(Self-reporting)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현장 의사결정과 의견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Ⅴ.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과로는 현재 한국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인 '가정의 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경찰관들의 '업무 가정(Working assumption)'과 연관되어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간섭주의, 수동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포 강제 제도(Mandatory arrest policy)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체포 강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선 경찰관들에게 가정폭력이 '집안 문제, 부부싸움'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Hoctor의 주장대로 강력한 정책을 통해 가정폭력은 '국가가 정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서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가해자의 처벌'이 가정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인식을 바꾸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제도화된 여성 피해자의 불평등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체포 강제 제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가해자의 처벌을 맡겨둠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경찰관의 응답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손에 맡겨두는' 현재의 제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포 강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혹은 일시 구금의 권한이 경찰관에게 부여되면 가정폭력 상황에서 경찰관을 '가정파괴의 책임', '불법체포의 우려'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특별법이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실효적 제재수단인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법이 정한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에 대해서도 경찰관은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체포 강제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상호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체포, 입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주된 가해자를 선별, 체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나타나듯이 비록 상호 폭행의 경우 둘 다 입건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재물 손괴의 경우에는 '주된 가해자'를 체포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과 '주된 가해자'를 조서에 기재하여 책임 소재를 명시하도록 하는 태도로 보아 체포 강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피해자가 잘못 체포, 기소되는 점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폭력 사범과 달리 가정폭력 사범만 중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폭력사건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데 특별히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 예외를 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가정폭력 사건이 방치될 경우 계속해서 반복되고 심지어 그 정도가 심각해지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다른 폭력 피해자에 비해 고소를 취소할 확률이 더욱 높아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이 다른 폭력 사건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적으로도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편견 즉 곧 '고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인식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신고율을 낮추고, 고소 취하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게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이미 가정폭력을 다른 폭력사건과 달리 경미하게 취급하고 있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 사범을 다른 폭력 사건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요약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 중한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집안일이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그 해결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법 체계와 정책이 가정폭력 사건의 해결에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가정의 유지'라는 법의 목적이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비간섭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경찰관의 인식은 교육이나 캠페인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 법이 취하고 있는 '가정유지'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이미 다수의 경찰관들도 주지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결정을 미루는' 점은 피해자의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경찰관에게도 부담을 주는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체포 강제 제도의 내용과 방법 등은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처벌의사', '체포'시 고려하여야 할 '영장주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에게 일시 구금의 권한이나 영장청구 권한 등이 주어져 있지 않고 모든 절차에서 검사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강제력 행사를 방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가해자에게 일시구금의 권한을 부여하여 '가해자의 분리'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소추 요건으로 하기 보다는 양형에서의 고려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가정폭력 사건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을 특별히 고려한 정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체포 강제 제도의 고려 사항은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경찰관들이 가해자에 대한 체포를 의무화 하고, 체포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관을 상대로 기본적인 인식만을 조사하였으나 가정폭력 사건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참여 관찰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자기응답 (Self-reporting) 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사건 현장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영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상관관계 분석 등에서 변수별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로 경찰관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는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경찰, 검찰청의 공식적인 집계는 신고된 범죄로 낮은 신고율을 감안한다면 감추어진 범죄가 더욱 많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광범위한 범죄통계의 수집과 피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실체적 측면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외국의 정책인 체포 강제 제도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관하여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적인 가부장제도, 가족중심주의 등도 경찰의 법집행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 강제 제도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소 등도 경찰 치안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병주 (199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김영정 (1998), '여성차별철폐협과 여성인권',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여성과 인권 세미나 자료집.

김재엽 (1998), '한국 가정폭력실태와 사회계층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박인혜 (2005) '가정폭력추방운동', 2005 시민연감.

변화순·원영애·정숙경 (1999),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금형 (2004)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검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표창원 (2000),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대응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소고; 영국 사례의 검토를 통한 경찰차원의 개선책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공청회 자료집.

한국 여성의 전화 보고서 (2005), 가정폭력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폭력 피해여성의 설문 응답 분석, 여성의 눈으로 9/10월호 서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

Bottomley, A. (1985) "What is happening to family law?: A feminst critique of conciliation" in Brophy, J. and Smart, D. (eds.), *Women in law: Explorations in law, family and sexuality.* London: Routledge.

Buzawa, E. S. and Austin, T. (1993). Determining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role of victim prefer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 610~623.

Crane, S. (1987) Washington's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Mandatory arrest tow years later, *Women's ADVOC.* 1.

Edwards, S. (1989) *Policing domestic violence: Women the law and the state*, London: Sage

Eigenberg, H. M., Scarborough, K. E., and Kappeler. V. E. (1996)

Contributory factors affecting arrest in domestic and non-domestic assaults.,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 27~54.

Ferraro, K. J. (1993) Cops, courts, and woman battering, in Pauline, B and Eileen G. *Violence against women: The bloody footprints*, Sage. London

Grace, S. (1999) Policing domestic violence and inter-agency working, in Hague, G., Malos, E., and Harwin, N. (1999) (eds) *The multi-agencyapproach to domestic violence : New opportunities, old challenges?* London: Whiting & Birch.

Gwinn, C. and O'Dell, A. (1993) Stopping the violence: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 and the prosecutor, *Western State University Law Review* 20: 297~314.

Hague, G. and Malos, E. (1993) *Domestic violence; action for change*, Cheltenahm: New Clarion Press.

Hart, B. (1996) Battered women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Buzawa, E. and Buzawa, C, eds., *Do arrests and restraining orders work? Beverly Hills,* CA:Sage.

Hilton, N. (1990) Mediating wife assault: Battered women and the new family, *Canadian Journal of Family Law,* 9: 29~53.

Hoctor, M. (1997)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against the state: The need for mandatory arrest in california, *California Law Review.* 85: 643~700.

Holye, C. (1998) *Negotiating domestic violence; Police, criminal justice, and victims,* London: Oxford Press.

Home Office (2001) Domestic violence strategy.

Jones, D. (1999) Police response to battering in a progressive pro-arrest jurisdiction, *Justice Quarterly*, 16: 249~273.

Klinger, D. (1995). Policing spousal assault,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308~324.

Kurz, D. (1993) Social science perspectives on wife abuse: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in Pauline, B and Eileen G. *Violence Against Women: The bloody footprints,* London: Sage

Manning, P. K. (1993) The preventive conceit: The black box in market contex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 639~650.

McConville, M., Sanders, A. and Leng, R. (1991) *The case for the prosecution: Police suspects and the construction of criminality*, London: Routledge.

Niederhoffer, A. (1967). *Behind the shield: The police in urban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Rifkin, J. (1984) Mediatio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Promise and problems., *Law and Inequality,* 2: 21~31.

Robinson, A. and Chandeck, M. (2000) The domestic violence arrest decision: Examining demographic, attitudi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Crime and Delinquency*, 46: 18~37.

Sherman, L. W. and Berk, R. A. (1984) The specific deterrent effects of arrest for domestic violence assaul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Sherman, L.W., Schmidt, J. and Rogan, D. (1994) *Policing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and dilemmas*, New York: Free Press.

Smith, D. J. and Gray, J. (1983) *Police and People in London,* Vol. 4, The police in action,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Song, Y. I. (1996) *Battered women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The silent scream*, London: Garland Publishing.

Stalans, L. J., and Finn, M. A. (1995). How novice and experienced officers interpret wife assaults: Normative and efficiency frames, *Law and Society Review*, 29(2): 287~321

Stanko, E, A. (1995) Policing domestic violenc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Special Supplementary Issue*, 31~44.

Stark, E. (1993) Mandatory arrest of batterers: A reply to its critic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6: 651~680.

Worden, A. P. (1993). The attitudes of women and men in policing: Testing conventional and contemporary wisdom, *Criminology,* 31: 203~237.

Zorza, J. (1994) Must we stop arresting batterers?: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ew police domestic violence studies, *New England Law Review.* 28: 929~36.

Policing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Myunghui Joo

Police officers have been accused of being reluctant to use enforc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in South Korea are not the exceptions to this claim. The survey results may be evidence that 'policing domestic violence' has not been successful in changing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The police officers think that the good of the 'family'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unishing the 'offender.' They have an attitude of non-intervention in cases of minor disputes. When they make a decision to arrest in domestic violence cases, they respect the victim's opinion, but it seems obvious that they do not fully understand victim's structural vulnerability. The policies and the law are not sufficiently supportive in handling domestic violence cases. Here, I suggest that introducing a mandatory arrest policy could be an answer to such 'ineffective policing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Key words: **domestic violence, Police, policy, mandatory arrest policy**